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

성별 여성

(나이) 50세

직종)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는 2015년 7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3일까지 □사업장에서 반도체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 수행 하였다. 2019년 7월 20일 이비인후과 진료(침샘염 증) 후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고, 21시 30분 아들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여 종 합병원 응급실 진료 결과 결절성 림프종 기타 뇌경색 진단 받았다. 이후 7월 23일 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 결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 진단받았 다. 2019년 11월 2일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근로자의 유족은 반도체 후공정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생 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20년 3월 4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워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 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2. 작업화경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장에서 PCB 판넬 검사 업무를 수 행하였고.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약 4년간 ○사업장에서 LCD 용 편광판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총 6개조가 있으며, 3개조는 주간, 2 개조는 야간, 1개조 휴일로 1주 단위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 근무시간은 주간 조는 08:00~18:00, 야간 조는 20:00~06:00이다. 근로자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 지 약 4년간 □사업장에서 반도체 후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 으며, 근무형태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2조 2교대이다. 근무시간은 A조 는 07:00 ~ 19:00. B조는 19:00 ~ 익일 07:00이다.

I. 암질환 가. 림프조혈기계암 28 29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9년 7월 20일 이비인후과에 다녀온 후 귀가하여 20시 30분 경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7월 21일 21시 30분 경 아들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연락을 취하여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실에서 진료한 결과 결절성 림프종, 기타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7월 23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이송하여 한국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11월 2일 사망하였다. 가족력 및 개인력은 확인된 특이사항 없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만 50세가 되던 2019년 7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고, 2019년 11월 2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장에서 PCB 판넬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사업장에서 포장 업무,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업장에서 반도체 공정 Back grinding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포름알데히드, 1,3 부타디엔, 벤젠, 방사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경우,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이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필알콜이고 노출 가능성도 미미하다. 방사선에 대한 노출 수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인 반도체 업종의 클린룸 환경의 경우 근무자가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업체의 클린룸의 경우 그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다. 끝